

2022년 생명농업특화지구육성사업 추진계획

- ▲ 우리군 농특산물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생명농업실천으로 품질고급화, 브랜드화를 통한 대외 경쟁력 강화
- ▲ 친환경농업 육성,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농업기반조성으로 농가 소득 증대

1. 사업개요

가. 전년과 달라지는 점

- 일몰제 적용 및 지원중단 : 1종(휴대용 전동가위)
 - ⇒ 수요량 감소 (금년도 희망농가는 전년도에 모두 조기지원)
- 신규사업 발굴 지원 : 하우스 환풍기(내부순환/강제), 블루베리 선별기, 원예용 트랙터
- SS기(과수방제기) 지원 세분화
 - ⇒ 작목다양화 및 하우스 재배 확대로 대형,중형,소형으로 세분화 지원
-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현실화
 - ⇒ 파이프 등 자재비 및 농기계 가격상승으로 지원단가 상향조정

세부사업명	당 초 (2021년)	조 정 액 (2022년)
과수Y자덕시설	18,000천원/ha	20,000천원/ha
포도간이비가림	44,000천원/ha	52,000천원/ha
SS기(대형500L 이상)	18,000천원/대	20,000천원/대 (충북도 지침에 의거 지원한도액)

나. 투자계획

1) 사 업 비 : 5,050,000천원

(도비 883,750천원, 군비 1,641,250천원, 자담·용자 2,525,000천원)

※ 지원비율 : 보조 50%(도비 17.5%, 군비 32.5%), 자담·용자 50%

2) 세부사업별 투자계획

※ 근거 : '22년 생명농업특화지구육성사업 추진협의회 심의결정사항('21.12.23)

○ 분야별

분 야	세부사업 수	총 사업비	배정비율
생산기반	8종	2,015백만원	40%
가공유통	4종	1,015백만원	20%
농 기 계	5종	2,020백만원	40%
		5,050백만원	100%

○ 세부사업별

분야	세부사업명	단가	단위	수요량	투 자 계 획				반영 율 (%)	비고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계	보 조	자 담		
총 계	17종					5,050,000	2,525,000	2,525,000	46	
생산기반	8종					2,015,040	1,007,520	1,007,520	48	
생산기반	과수Y덕시설	20,000	ha	16.73	8.44	168,800	84,400	84,400	50	
생산기반	과수우산식덕시설	26	세트	8,525	4,300	111,800	55,900	55,900	50	
생산기반	관수시설	4,000	ha	165.33	25.62	102,490	51,245	51,245	15	
생산기반	포도간이비가림	52,000	ha	39.73	22.05	1,146,600	573,300	573,300	55	
생산기반	하우스 자동개폐기	150	개	1,742	879	131,850	65,925	65,925	50	
생산기반	하우스 환풍기(순환)	75	개	4,406	2,220	166,500	83,250	83,250	50	신규
생산기반	하우스 환풍기(강제)	200	개	129	115	23,000	11,500	11,500	89	신규
생산기반	하우스 방열환풍기	200	개	1,625	820	164,000	82,000	82,000	50	
가공유통	4종					1,014,960	507,480	507,480	100	
가공유통	과일선별기	6,000	대	75	75	450,000	225,000	225,000	100	
가공유통	블루베리 선별기	1,500	대	16	16	24,000	12,000	12,000	100	신규
가공유통	비파과당도측정기	3,000	대	137	137	411,000	205,500	205,500	100	
가공유통	과일운반(콘티)상차	3.8	개	34,200	34,200	129,960	64,980	64,980	100	
농기계	5종					2,020,000	1,010,000	1,010,000	36	
농기계	SS기(대형500L)	20,000	대	179	12	240,000	120,000	120,000	7	
농기계	SS기(중형3~400L)	10,000	대	62	30	300,000	150,000	150,000	48	신규
농기계	SS기(소형200L)	4,000	대	112	112	448,000	224,000	224,000	100	신규
농기계	원예용 트랙터	20,000	대	12	12	240,000	120,000	120,000	100	신규
농기계	동력운반차	3,000	대	264	264	792,000	396,000	396,000	100	

다. 지원조건

- 1) 지원대상 : 관내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영농회사법인, 생산자단체
- 2) 지원기준 : 보조 50%(도비 17.5%, 군비 32.5%), 자담 50%

※ 도 지침에 의거 농기계의 경우 보조 한도액은 10,000천원 이내에서 지원

3) 농가당 지원규모

- 읍·면 자체 심의회에서 배정물량을 감안하여 기준에 따라 배정
- 농가별 일괄 균등분배 방식 지양, 규모화·경쟁력 있는 농가에 중점지원

2. 세부 사업추진계획

가. 읍·면 추진협의회(심의회) 구성 운영

- 1) 구성 : 읍·면장, 산업팀장, 이장대표, 작목회장 등 읍·면장이 인정한자
- 2) 운영 : 사업별 대상자 선정(우선순위결정) 및 추진계획 수립 등

나. 지원대상자 선정

1) 대상자 선정 일반기준

- 농가의 사업신청서상의 지번, 지적이 공부상 일치되는지 확인
- 신청농가가 실제 본인인지 여부확인
 - ⇒ 사업과정에서 적발시 보조결정취소 및 향후 본 사업 지원배제
- 신청량보다 배정량이 적을 경우 자체 평가기준을 설정, 세부사업별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추진협의회(심의회)에 상정, 공개심의 등의 방법을 통해 공정성 확보
- 사업추진 심의회에서 사업물량 조정, 추가되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추진
- 신청 사업의 농가 자부담 능력여부

2) 지원 제외대상(공통)

- 공무원, 공공기관(철도, 교육청 등)에 근무하는 자
- 지방세 및 세외수입체납자(단, 보조금교부신청 전 완납시 지원가능)
- 최근 3년간(19년~21년) 생명농업특화지구육성사업 포기자
 - ⇒ 단, 불가피한 포기사유가 분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읍·면 추진협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가능(사망, 재해, 행정착오 등)
- 보조금교부결정 전 사업추진하는 자
- '16년 FTA 폐업(포도, 블루베리)지원농가(단, 묘목식재 전 시설설치 시 가능)
- 위 항의 사업포기자가 타인(가족) 명의로 본 사업을 신청한 경우
- 사업대상지가 개발예정지구, 시설물 설치 제외지역으로 확정 고시된 지역, 하천부지(제방내 개인하천부지는 가능), 도로예정지 등 공공목적의 부지로 편입될 예정지역은 제외

4) 사업대상자 유의사항

- 시설사업은 사업대상지가 사업신청자 명의의 토지가 아닌 경우, 토지 소유자와의 '시설물설치 및 관리 협약서' 징구 후 대상자 선정(보조금 교부신청시 사본제출) ⇒ **미제출시 지원불가**

다. 사업추진 지도

- 1) 보조금교부결정 즉시 보조사업자별로 사업량, 사업비, 사업내용, 사업추진 방법 등을 필히 개별안내하여 견실추진 지도
- 2) 착공단계부터 현장지도를 철저히 하여 제 규격에 맞게 시공토록 지도
- 3) 동일한 방향에서 착공 전 · 중 · 후 단계별 사진촬영을 하여 자료 확보
- 4) 시설물 설치는 가급적 전문시공업체와 계약을 통한 사업추진으로 견실시공
- 5) 자재는 KS규격품사용, 중고 및 비품사용 엄금(적발시 보조결정 취소)
- 6) 모든 사업은 결정 즉시 착공하여 상반기중 완료되도록 특별 지도·감독
- 7) 원활한 A/S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업체에서 자재 구매·시공 권장

라. 사업계획 변경

- 1) 확정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함
- 2) 보조금교부결정 후 중도 포기한 농가는 향후 3년간 사업지원 불가

마. 준공검사(완료확인)

- 1) 읍·면장은 사업완료시 견실시공, 정품자재 사용, 사업량(면적,수량) 등을 현지 확인하여 준공검사 실시
- 2) 2022. 11. 31일까지 사업완료토록 하고 완료서류는 12. 10일까지 제출 완료
- 3) 읍·면장은 준공검사 후 구비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완료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

바.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1) 사업의 투명성 및 명확한 사업비 검정을 위해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통장 계좌이체 의무화 (현금, 무통장입금 불인정)
 - ※ 별도 “보조사업 전용 통장” 개설(보조금 및 용자·자부담 합산관리) 권장
- 2) 보조금 지원은 사업추진실적(현장확인) 및 사업비 집행실적을 확인 후 지원
 - 농가의 사업비 집행은 자부담금 이상 실집행(이체)시 보조금 지원가능
 - ※ 사업완료시 구비제출서류 【순서 준수】

- | |
|---|
| ①사업완료확인서(서식4-1,2,3) ②사업비투자내역서(서식5) ③사진(사업 전,중,후 각 1부/기계·장비의 경우 농가+기계·장비, 기대번호판, 보조지원안내문 각 1부) |
| ④세금계산서 ⑤납품서 [기계·장비의 경우 ‘기대공급확인서(서식6)’] ⑥견적서 |
| ⑦인건비 영수증 [인부사용시/필히 인부 자필작성(서식7)] ⑧금융거래내역 (통장계좌이체 사본) ⑨보조금교부신청서(서식1) 및 사업계획서(서식1-1,2,3) |
| ⑩시설물설치 및 관리확약서(서식2) [사업대상지가 본인소유가 아닌경우만 해당] |
| ⑪이행서약서(서식3) |

- 시설사업의 인건비는 보조결정 총사업비의 30% 한도에서 사업비로 인정되며, 추가되는 금액인 사업자 자부담(단, 관수시설은 총사업비의 20% 한도, 우산식덕시설은 인건비 미포함임)
- 부가세 환급품목의 경우 부가세는 투자내역서상에 제외
 - ※ 환급대상 품목의 세금계산서는 원본 대조 복사 후 **원본은 농협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도록 반환 및 안내**
 - ※ 부가세 환급 및 영세율 품목 : 별첨

3) 보조금 정산 : 보조금 집행(지출) 후 지정기간내 정산결과 제출

사. 사 후 관 리

- 1) 사후관리기간 : **5년**
- 2) 사후관리 책임 : 읍·면장
- 3) 시설 및 기계,장비는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효율적으로 관리 되도록 지도 · 감독, 사후관리책임자를 지정관리
- 4) 처분제한 기준 : 사후관리 기간중 부득이한 사유로 처분해야 할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실시
- 5) 사후관리 : 연 1회 이상 점검

3. 세부사업별 추진요령

□ 과수Y자덕시설

- 지원품목 : 복숭아, 자두, 배 / 자 재 : KS규격자재 사용
- 사업단가 : 20,000천원/ha ※ 일부품목 부가세 환급임



필요품목	규격	단위	수량
파이프	Ø25.4×1.5T×9m	본	1,380
조리개	Ø25	개	1,800
철사조리개	Ø25	개	2,900
마무리T	Ø25	개	180
코팅와이어	Ø6	m	9,000
인건비	총사업비 30%이내	명	50

□ 과수 우산식 덕시설



- 지원품목 : 복숭아, 자두
- 사업량 산정 : 1주당 1세트
- 필요자재(세트) : 지주파이(Ø48mm ×1.9T×5m), 캡, 연결끈 등
- ※ 자재비만 지원(인건비 지원 없음)
- 사업단가 : 26천원/세트
- ※ 농업용파이프만 환급품목

□ 과수 관수시설

- 자 재 : KS규격자재 사용
- 지원품목 : 전 과종 - 사업단가 : 4,000천원/ha



필요품목	규격	단위	수량
메인관	40*100m	롤	2
연질농수관	25mm*100m	롤	20
스프링쿨러		set	910
밸브	25mm	개	20
마감		개	20
새들고정구	40*25	개	20
인건비	총사업비 20%이내	명	10

□ 포도간이비가림

- 자 재 : KS규격자재 사용 /

※ 일부품목 부가세 환급

- 사업단가 : 52,000천원/ha

필요품목	규격	단위	수량
농원용파이프(기둥)	Ø32×1.5t	m	3,300
농원용파이프(가로대)	Ø25×1.5t	m	8,800
농원용파이프(횡대)	Ø25×1.2t	m	2,300
농원용파이프(활대)	Ø25×1.5t	m	9,100
U클램프	Ø32	개	1,300
조리개	Ø25	개	5,500
연결핀	Ø25	개	1,500
고정구	Ø32	개	1,200
장수필름	0.1mm×250cm×50m	롤	70
비닐클립	Ø25	개	11,600
T고정구	25mm	개	1,400
피스못		봉지	25
인건비	총사업비 30%이내	명	180

□ 하우스 환풍기(내부순환/강제) ⇒ 신규지원 ※ 부가세 환급 품목

- 지원대상 : 과수원에 시설 하우스

 <p>(내부순환-소형)</p>	<p>○ 내부순환 환풍기(소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가 : 75천원/개 - 목적 : 하우스 내부공기 순환용 - 환기팬 규격 : 300mm × 300mm 이상 - 지원한도 : 63㎡(19평당) : 1대 <p>○ 강제 환풍기(대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가 : 200천원/개 - 목적 : 하우스 내부공기의 외부배출(강제환풍) - 환기팬 규격 : 직경 450mm 이상 - 지원한도 : 165㎡(50평당) : 1대 <p>※ 필요자재 : 환풍기, 컨트롤박스</p>
 <p>(강제-대형)</p>	

- 우선지원 대상 : 경사지에 설치로 공기순환이 시급한 하우스, 시설면적이 크고 유류대 사용량이 많은 농가 우선지원
- 현지확인 결과 경사지, 비정형 등 재배여건이 악조건으로 환풍기 추가 설치가 크게 필요한 경우 기준사업량의 15% 한도내에서 추가배정 가능

□ 하우스 자동개폐기

※ 영세올 품목



- 지원대상 : 과수원에 시설하우스
- ※ 비가림 돌레를 막은 개량형비가림시설은 ‘노지’ 재배시설로 지원불가
- 필요자재 : 자동개폐기, 컨트롤박스(자동제어기기)
- 사업단가 : 150천원/개

□ 하우스 방열환풍기

※ 영세올 품목



- 지원대상 : 과수원에 시설하우스
- 지원한도 : 하우스면적 30평(약100㎡)당 1대 한도
- 사업단가 : 200천원/개
- 필요자재 : 방열환풍기, 컨트롤박스(자동제어기기)
- ※ 곰팡이병 및 냉해, 고온장애 예방목적으로 하우스 실내 온도 약1~3도 가온효과로 유류대 절감 기대

□ 과일선별기

※ 영세올 품목



- 지원품목 : 포도, 사과, 배, 복숭아, 자두
- 사업비 단가 : 6,000천원/대
- 우선지원대상 : 선별기 미보유 농가중 과수 재배면적이 많은 농가, 선별과종이 많은 농가 등
- 한국 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기재 중 선별기 지원 기준제원을 준수하되, 농가 선호기종 구입 (선별능력, 작업의 안정성, 용이성, A/S 등 종합고려)
- 기대인수 확인서 징구 및 보조지원 농기계 표찰 부착

□ 비파괴당도측정기

※ 부가세 환급 품목

- 지원품목 : 포도, 사과, 배, 복숭아, 자두 등
- 사업비 단가 : 3,000천원/대
- 우선지원대상 : 본장비 미보유 농가중 해당과종 재배면적이 많은 농가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정부지원 농기계목록집에 ‘휴대용비파괴당도측정기’로 등록된 제품 중 안정성, A/S 등을 고려하여 국산생산제품 이용
- ※ 해아림社の ‘SUNFOREST’ 모델에 한정하여 구입 사용
- 기대인수 확인서 징구 및 보조지원 농기계 표찰 부착

□ 과일운반상자

※ 부가세 환급 품목

- 지원대상 : 과수분야 작목반,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
- **사업비 단가 : 3.8천원/개**(사업단가보다 적은 경우 실집행 금액으로 산정)



- 지원규격 : 소형 운반상자(그림2~4 참고)
⇒ 노령화에 따른 노동력 절감 및 운반 중 부상발생 예방 취지
- ※ 기존 운반상자(그림1)도 지원은 가능하나, 사업단가 한도내에서 지원되며 추가 금액은 자부담

□ SS기(과수방제기)

※ 영세울 품목

- 지원대상 : 과수원예품목 재배농가
- 규격별 사업비 단가

대형(500ℓ이상)	20,000천원/대(승용) ※단, 보행형의 경우 10,000천원/대
중형(300~400ℓ)	10,000천원/대(승용)
소형(200ℓ이하)	4,000천원/대(보행형)

- 우선지원대상 : 과수방제기 미보유농가 중 재배면적이 많은 농가
- 동일기계를 지원받아 사후관리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농가 제외
- 한국 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스피드스프레이어’ 등록된 기계 중 농가 선호기종 구입
- 기대인수 확인서 징구 및 보조지원 농기계 표찰 부착



□ 원예용 트랙터

※ 영세울 품목

- 지원대상 : 과수원예품목 경작용으로 사용코자 하는 농가
- **사업비 단가 : 20,000천원/대**
- 우선지원대상 : 트랙터 미보유 농가 중 과수재배면적이 많은 농가



- 한국 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기재 중 트랙터 지원 기준제원을 준수하되, 농가 선호기종 구입 (작업의 안정성, 용이성, A/S 등 종합고려)
- ※ **기준제원 : 엔진마력 40 이상**
- 기대인수 확인서 징구 및 보조지원 농기계 표찰 부착

□ 동력운반차

※ 영세울 품목

- 지원대상 : 과수원예품목 재배농가

- 사업비 단가 : 3,000천원/대

- 우선지원대상

: 동력운반차 미보유농가 중 재배면적이 많고 고령농가

※ 동일기계를 을 지원받아 사후관리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농가 제외



- 한국 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기재 중 동력운반차 지원 기준제원을 준수하되, 농가 선호기종 구입 (적재적량, 작업의 안정성, 용이성, A/S 등 종합고려)
- ※ 기준제원 : 적재정량 0.2톤 이상, 엔진탑재 보행형
- 기대인수 확인서 징구 및 보조지원 농기계 표찰 부착

◆ 농기계보급에 따른 보조지원명시 요령

- 표기판 설치 : 농기계 공급업체에서 필히 부착 후 농가 공급

- 크 기 : 20cm x 10cm

- 재 질 : 0.5mm이상 알루미늄 합금판

- 설치형태 : 농기계 정면 중앙위치에 6공의 구멍을 뚫어 리벳을 이용하여 표기판 압착설치

- 표기형식 : 암각글자 적용(검정글씨)

단, 지원기종에 따라 규격과 재질이 변경될 수 있음

보 조 지 원 농 기 계

○ 품명 및 규격 :

○ 이 농기계는 2022년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사업으로 충청북도와 영동군에서 보조 지원한 농기계입니다.

영 동 군

※ 필요 사진 : 농가와 농기계 근접사진 1매

보조지원 표기판, 제조번호판이 육안으로 식별가능한 사진 각1매

(별첨)

□ 농자재, 농기계·장비의 부가세 환급 및 영세율 품목

※ 근거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개정 2021. 2. 17.>

▲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 (제3조제3항관련)

1. 경운기 및 부속작업기
2. 농업용 트랙터 및 부속작업기 ⇒트랙터
3. 관리기 및 부속작업기
4. 이앙기 및 부속작업기
5. 목책기(농작물 보호용만 해당한다)
6. 고속분무기(스피드스프레어) ⇒SS기(과수방제기)
8. 콤팩트
9. 곡물건조기
12. 동력중경제초기
13. 동력수확기
15. 동력상토조제기
16. 정식기
17. 농업용 난방기 ⇒하우스 방열환풍기
18. 앞담배건조레이크이송기
19. 농업용 병충해방제기
22. 탈곡기
23. 동력휴집기
25. 비료살포기
27.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
28. 농산물 결속기 ⇒봉지봉합기
29.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 ⇒동력운반차
30. 농산물 세척기
31. 동력심경기
33. 동력구굴기
34. 동력가지절단기 및 파쇄기 ⇒휴대용전동가위, 가지파쇄기,
35. 동력수피기 및 파쇄
37. 동력비닐피복기 및 동력피복개폐기 ⇒하우스개폐기
38. 육묘상자
40. 파종기
41. 농업용 스프링클러 ⇒관수시설 중 스프링클러

42. 버섯재배소독기

▲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임업용 기자재**(제7조제1호 관련)

1. 농업·임업용 **필름**[비닐하우스용, 보온못자리용, 작물피복용, 과수 또는 수실류(樹實類) 재배용에 한정]과 그 **부속자재**(비닐 고정용 **패드** 및 **클립**, 파이프**조리개**, **고정구** 및 **연결편**, **파이프꽂이**에 한정)
2. 농업·임업용 **파이프**(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 또는 수실류 재배용에 한정한다)
3. 농업·임업용 **포장상자**(**종이재질**의 농산물·임산물·축산물 포장용에 한정한다)
4. 농업·임업용 폴리프로필렌 포대(곡물 포장용에 한정한다)
5. **과일 봉지**(과일의 병충해 방지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해 열매에 씌우는 봉지에 한정한다)
6. 인삼재배용 지주목·광망·차광지 및 은박지
7. **차광망**(연초·표고버섯 건조용 또는 과수·화훼·채소·야생화·산채 재배용에 한정한다)
8. 농업·임업용 **부직포**(작물·수실류 재배용 및 축산업용에 한정한다)
9. 농업·임업용 **배지**(배지(培地: 생물을 기르는 데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 있는 액체나 고체로, 배양액·버섯 재배용에 한정한다)·버섯 재배용에 한정한다) 및 양송이 재배용 복토
10. 축산업용 톱밥(「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사용기준을 충족한 것에 한정한다)
11. 이앙기용 멀칭종이(논농사 피복용에 한정한다)
12. 농업·임업용 **방조망(防鳥網)** 및 **방풍망**(과수·수실류·작물 재배용 및 축산업용에 한정한다)
13. 농업·임업용 **양수기** ⇒**모터** 14. 범씨발아기 15. 동력배토기 16. 예취기
17. 가축급여(家畜給與) 조사료(粗飼料: 단백질, 전분 등이 적고 섬유질이 많은 사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생산용 필름
18. 화훼·야생화용 종자류 19. 채소봉지(애호박·오이용에 한정한다)
20. 버섯재배용기 21. 축산업용 차량방역기 22. 폐사축처리기 23. 축사세척기
24. 카우브러쉬 25. 축산 악취제거기 26.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27. 작물 지주대 28. 농업·임업용 무인 항공기 29. 농업·임업용 로더(2톤 미만)
30. 농업·임업용 굴착기(1톤 미만) 31. **동력제초기** ⇒**승용·보행형제초기**
32. 농업·임업용 고압세척기
33. 농산물 및 임산물 **저온저장고**(**바닥면적이 17㎡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34. 농업·임업·축산용 **환풍기**(**컨트롤러를 포함**하며, 시설하우스용 또는 축사용에 한정한다)
35. 축산용 인공수정 주입기 36. 축산용 인공수정 주입용기 37. 축산용 정액 희석제
38. 축산용 인큐베이터 39. 축산용 출하돈 선별기 40. 축사용 보온등 컨트롤러
41. 축사용 쿨링 패드 42. 축사용 워터컵 43. 축사용 바닥재[**철재(鐵材) 바닥재에 한정한다**]
44. 농산물·임산물 **수확용 상자**(**플라스틱 재질에 한정한다**) ⇒**운반(콘티)상자**
45. 화훼·야생화 재배용 배지
46. 화훼·야생화 재배용 화분(폴리에틸렌, 플라스틱 및 고무 재질에 한정한다)
47. 유해동물(해충을 포함한다) **포획기** 48. 농업용 양파망·마늘망 49. 축산 착유용 라이너
50. 축산용 분만실 깔판 51. 축산용 대인소독기 52. 축산용 방역복 53. 조사료 생산용 네트
54. 팽연왕겨 55. 탈봉기 56. 소문망 57. 조사료 생산용 종자류
58. **점적(點滴)호스**(**점적테이프 및 분수호스**를 포함한다) ⇒**관수시설 중 점적관수**
59. 농업용수 처리기 60. 농업용 제습기 61. 농산물 건조기
62. 농산물 **선별기** 및 정선기 ⇒**과일선별기**

◆ 관수시설의 부가세와 영세율 적용

1. 관수시설이란?

- 농작물이 식재되어 있는 밭에 물을 끌어와 작물에 물을 공급하는(관수) 시설

2. 시설종류

- 가. 점적관수 : 가는 구멍이 뚫린 관을 땅속에 약간 묻거나 땅위로 늘여서 작물 포기마다 물방울 형태로 물을 주는 방식



- 나. 스프링클러 : 물에 높은 압력을 가해 노즐에서 물보라처럼 분사하는 방식



3. 사업추진시 영세율 및 부가세 환급 적용기준

가. 영세율 적용 : 농업용 스프링클러

- 농업인이 자재업체 1곳에서 스프링클러를 정상 운영하기 위한 필수자재(모터, 농수관, 밸브, 미니스프링클러 등)를 모두 구입한 경우 전체품목 영세율 적용
⇒ ‘농업용 스프링클러’ 라는 명칭과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해야함
단, 필수자재들을 여러 업체에서 별도 구입한 경우는 영세율 적용 안됨
예) A업체 : 모터구입, B업체 : 농수관 구입, C업체 : 스프링클러 구입

나. 부가세 환급 : 점적호스, 점적테이프, 분수호스만 해당

- 스프링클러와 다르게 주변 필수자재는 해당되지 않으며 위의 세품목만 환급 (즉, 구멍이 뚫려있는 관만 해당)
⇒ ‘점적호스’ 등 정식품명이 기재되어야 하며, 세금계산서 원본은 농가에게 주고 농협에서 부가세 환급신청토록 안내, 면과 군에는 사본 후 원본대조필 직인날인하여 제출

※ 적용근거

- 농축산임어업용 기재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등에 대한 특례규정 제3조3항, 제7조 제1호
- 국세청 질의답변(2018. 4. 2)
- 농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백승권 주무관) 질의답변(2018. 4. 4)